■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9. 12. 24.>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1.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 (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2. 중단기간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중단을 명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3. 중단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포장재·제품의 1일 당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1일당 출고·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